

기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

의안	
번호	

○ 발의년월일 : 2000. 5. 25

○ 제안자 :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조사계획 : 별 첨

각종기금 운용실태 조사계획

-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
- 조사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잘못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여 군민의 의혹 해소는 물론 금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

1. 조사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-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

2. 조사기간

- 2000. 5. 27 ~ 2000. 7. 5 (40일간)

3. 조사장소

-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 회의실
-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

4. 조사대상

- 1997. 1. 1. 이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상황

5. 조사특별위원회 구성

- 구성인원 : 7 명
 - 위원장 1명 - 간 사 1명 - 위 원 5명
- 위원장 : 민용기 의원
- 간 사 : 박윤수 의원
- 위 원 : 박병옥, 문팔갑, 조영길, 양동복, 정해봉 의원

6. 조사방법

- 기금 관리 현황 징구,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
-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확인 병행
-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조사
-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
- 조사진행은 공개원칙이나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가능

7. 조사결과 처리

- 조사결과 경미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하도록 요구

8. 소요경비 집행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변상 및 소요경비 지급

9. 행정사항

○집행부의 자료요구

- 제출기일 : 2000. 6. 7
- 요구자료 : '97. 1. ~ 2000. 5. 31 까지의 자료제출 (18부씩 제출)
 - 기금현황
 -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
 - 기금집행현황
 - 총관표
 -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 사본
 - 지출 증빙자료
 - 최종 자금정산서 사본
 - 기타 회계관련 장부일체